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19-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948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양○○, 최○○
피고, 피항소인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강○○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합7176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5,860,084원 및 그중 245,932,991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59,927,093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각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3.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5,860,084원 및 그중 245,932,991원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259,927,093원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각각 항소이유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를 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변경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860,084원과 그중 245,932,991원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59,927,093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각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시 ○○구 A, B, C, D 4필지, ○○시 ○○구 E, F, G, H 4필지)에 관하여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한 것은 면세 대상에 대한 과세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해당 재산세 합계 505,860,08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상당액인 505,860,08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 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판시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6236 판결을 첨부하여 2015년 재산세 기납부액 및 2016년 재산세 납부 예정액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 2016. 9. 21.이나 늦어도 원고의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해 결정 통지를 한 2019. 1. 17.에는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여 원고가 오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세를 환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해당 재산세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해 결정 통지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도 환급 대상이라는 신뢰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환급을 지연하다가 2021. 11. 23.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해당 재산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고치는 부분

1) 3쪽 1행 '2015년 재산세'를 '2015년 1기분 재산세'로 고친다.

2) 6쪽 2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9. 1. 17.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의 환급 채무 내지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의 환급 채무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1)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2018년 재산세 착오 납부금 환급 요청'이라는 공문(갑 18)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 중 ○○시 ○○구 A, B, C, D 4필지와 ○○시 ○○구 E, F, G 3필지의 2017년 재산세와 ○○시 ○○구 A, B, C, D 4필지와 ○○시 ○○구 F, G 2필지의 2018년 재산세 환급을 요청하였다[공문 제목과 달리 첨부된 환급 신청 대상 필지 목록에는 2017년 재산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2018년 재산세만이 아니라 2017년 재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이와 달리 원고는 2021.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의 재산세 환급을 요청하면서(갑 11) 환급 대상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 전부가 아니라 2017년 재산세의 경우 H 토지, 2018년 재산세의 경우 E, H 토지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 E, H 토지는 2017. 9. 14. 학교용지에서 제외되어(을 6) 더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토지이다. 2)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게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갑 9)를 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 중 E, H 토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환급 대상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가 E, H 토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 토지들은 2017. 9. 14. 학교용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도 필지별로 면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이다. 3) 원고는 피고가 한 결정 통지의 '검토 결과' 부분에 '대상(2015~2018) - (해당 학교용지의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라고 표시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17년, 2018년 외에 2015년, 2016년 재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결정 통지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어디까지나 원고의 2017년, 2018년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 전부에 대해 재산세 환급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의 결정 통지 또한 이 사건 학교용지 전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피고는 재산세 환급 대상이 아닌 토지는 의도적으로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2017년, 2018년 재산세 환급 대상이라고 표시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계속 부과한 점(을 1~5)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필지별 검토 결과에 과세연도와 관련 있어 보이는 연도를 표시한 점만으로 원고가 요청하지도 않은 2015년, 2016년 재산세 환급 채무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재산세 환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 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 9. 14.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학교용지 중 E, H 토지가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것과 같이, 재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세 면제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학교용지가 특정 과세연도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연도에도 반드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다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안인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6236 판결이 첨부된 가운데 2015년 재산세 기납부액 및 2016년 재산세 납부 예정액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은 2016. 9. 21.에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부과가 곧바로 환급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위법 여부나 정도가 분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2019. 1. 17.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재산세 환급 요청에 대해 결정 통지를 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손해의 전보 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더구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89조), 재산세 환급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2)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환급의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재산세의 환급을 승인하거나 재산세 환급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원고가 이 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8

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손○○

판사 황○○

판사 김○○